

●●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 세금정보

국세청



- 01 부가가치세 안내
- 01-1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 02 종합소득세 안내
- 02-1 기준(단순)경비율제도
- 0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04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 05 홈택스(Home Tax)이용 방법
- 06 불복청구 절차
- 07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0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09 납세자 권리헌장

07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체납 등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안내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 1 ~ 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사업관련분)을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게 간편하게 조회기능 부여

0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 고시
제 1999-20, '99.7.3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일반과세자에 한함)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이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차장 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 2006-26, '08.7.1

주류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1) 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급매장, 농·수·신협매장
(가)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할인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
(2) 소매업자 및 위 (1)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 주류
- 나.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국세청 고시
제 2007-14, '07.7.1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 이외에 업종에 따라 별도 교부하는 "유흥음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09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❶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형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❷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❸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❹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❺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❻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❼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❽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❾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 세 청 장